

#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증원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제12조제1항)
- 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 추가(안 제13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를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서장”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br>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br><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br>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br>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br>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br>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br>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br>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구성) ① -----<br>-----<br><u>15명</u> -----<br>-----<br>-----<br>-----<br>-----<br>-----.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br>되고, 부위원장은 <u>아동복지업무</u><br><u>담당국장이 된다.</u>                                                                                                                                | ② -----<br>----- <u>위원 중에서 호</u><br><u>선한다.</u>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br>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br>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br>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br>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br>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br>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br>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br>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 1. <u>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또는</u><br><u>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u><br><u>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u><br><u>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u><br><u>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u>                                                              |                                                                                            |
| 2. <u>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u>                                                                                                                                                                    |                                                                                            |

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인 사람이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                                                                                                                               |                                                                                                                                                                                        |
|-------------------------------------------------------------------------------------------------------------------------------|----------------------------------------------------------------------------------------------------------------------------------------------------------------------------------------|
|                                                                                                                               | <p><u>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p> <p><u>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p> |
|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u>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u>                           | <p>제10조(우선조치) -----</p> <p>-----</p> <p>----- <u>응급 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u>-----.</p>                                                                                                |
|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u>부서장이 된다.</u>                                                            | 제12조(간사) ① -----                                                                                                                                                                       |
| ② (생략)                                                                                                                        | ----- <u>담당계장</u> ----                                                                                                                                                                 |
|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u>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제14조(수당 등) ----- <u>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u> -----</p> <p>-----</p> <p>-----.</p> <p>-----</p> <p>-----</p> <p>-----.</p>                                                                  |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생략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도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관련 시·군·구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위원 섭외가 어려워 시·군·구에서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항
4. 그 밖에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 소속 4급 공무원 이상(시·군·구는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

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14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세출 예산이 약 5,040,000원 정도로 예상됨

- 산출내역 : 70,000원 × 6명 × 12회 = 5,040,000원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구미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 초과)

## 4. 작성자

아동보육과 아동보호담당 윤 유 진

| 소 관 부 서     |       | 아동보육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권 혁 성               |
|             | 담 당   | 권 선 순               |
|             | 담 당 자 | 윤 유 진<br>(480-6592) |